



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

2026.07.30

안녕하십니까, 법무법인(유) 세종 기업·금융분쟁그룹입니다.

저희 그룹은 기업상사 분쟁, 경영권 분쟁, 회생·도산, 금융 분쟁 및 기업형사사건 등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이번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7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
- **주요 판결** : 2026년 6월 판례공보에 수록된 기업·금융분쟁 분야 대법원 주요 판결
- **이슈 소개** : 김동규 변호사의 ‘회생·파산 이야기’ (제7편)
- **개정 법령 관련 안내** : 전자주주총회 상법 시행령 공포 – 입법예고안에서 달라진 점과 상장회사의 준비사항
- **승소 사례 소개** : 기업금융분쟁그룹의 최근 승소사례 안내

본 뉴스레터가 귀하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26년도 6월 판례공보 중 기업·금융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

- ▶ **대법원 2026. 4. 9. 선고 2024다324972 판결 (key word : 파산관재인인 부인권, 부인권 행사의 상대적 효력, 채무자회생법 제399조, 공동근저당, 배당금 부당이득반환)**
공동근저당권자가 파산관재인인 부인권 행사에 따라 채무자 소유 근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받은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,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그 배당으로 소멸한 피담보채권과 몰상보증인 소유 근저당물의 경매대가에 관한 우선배당권이 원상회복되므로, 몰상보증인 소유 근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잉여금을 배당받은 자는 원상회복된 우선배당권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
- ▶ **대법원 2026. 4. 16. 선고 2025다220126 판결 (key word: 공탁보증보험, 피해자의 직접청구권, 상법 제726조의 5)**
공탁보증보험 약관이 보험금 청구 요건으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요구하는 경우,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관련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법리나 상법 제726조의5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이 요건을 우회할 수 없으며, 보험계약자가 파산면책을 받은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사례.
- ▶ **대법원 2026. 4. 10.자 2024그834 결정 (key word : 파산선고 후 채무자 사망,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,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, 한정승인 간주효)**

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 진행 중 사망하여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 경우, 이는 '상속재산' 자체에 대한 파산 선고가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의 한정승인 간주 규정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

▶ **대법원 2026. 4. 30. 선고 2023다216388 판결 (key word : 자산담보부기업어음(ABCP), ABCP 발행·유통자, 투자자보호의무, 유동 화자산 위험, 신용평가, 유통시장 투자자, 손해발생시점, 지연손해금 기산일, 채권자대위권)**

ABCP의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킨 금융투자업자는 유동화자산의 수익구조·위험요인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·제공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고, 그 책임은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않은 유통시장 투자자에게도 미치며, 이때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어음 만기일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본 사례

▶ **대법원 2026. 4. 30. 선고 2026도459 판결 (key word :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, 자본시장법 제373조,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, 금융투자상품시장, 리딩방 투자사기, 허위 투자 사이트)**

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 투자 사이트라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가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추었다면 자본시장법상 '금융투자상품시장'에 해당하여 무허가 개설·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사례

2. 이슈소개

▶ **김동규 변호사가 들려드리는 회생·파산 이야기(7)**

법무법인(유)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 도산팀 김동규 변호사입니다. 2003년부터 2024년까지 20여 년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회생 및 파산 사건을 담당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한해 매달 도산절차를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하였습니다,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. 업무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. 남은 이야기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• 7호 : 회생담보권

3. 개정 법령 관련 안내

▶ 전자주주총회 상법 시행령 공포 – 입법예고안에서 달라진 점과 상장회사의 준비사항

4. 승소사례 소개

기업금융분쟁그룹이 수행하던 사건 중 최근 승소한 사례들을 소개드립니다.

▶ 사모펀드 판매회사인 원고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조정결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한 후 자산운용사·관련 증권사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, 피고측의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임의로 인정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

을 배척시키고 피고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

▶ 주주총회 의장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것에 대하여, 주주총회 의장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
관련구성원

최창영

대표변호사

02-316-1947

cychoi@shinkim.com

이원

변호사

02-316-4406

wlee@shinkim.com

문희춘

변호사

02-316-4051

hcmoon@shinkim.com

최복기

변호사

02-316-1613

bgchoi@shinkim.com

이숙미

변호사

02-316-4016

smlee@shinkim.com